



202.10 호

행정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재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umber 202)을 발령했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COVID-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욕주에서 COVID-19에 감염된 환자와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침대 용량, 소모품 및 공급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

뉴욕 의료 시스템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치료를 제공 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 및 물품 제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4월 22일 수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행정명령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 수를 늘리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일반 병원이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2803항 및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의 10장 400절, 401절, 405절, 409절, 710절, 711절, 712절.

- 응급, 비응급 및 저시력 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응급 의료 서비스"의 정의를 수정하고, 승인 받은 구급차 서비스 또는 외부 사업자가 이러한 구급차 서비스 등록 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승인한 기본 서비스 지역 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며, 보건 커미셔너가 비상 치료 서비스 제공 승인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승인받은 변경 등록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고, 보건부가 사전 승인한 치료 시설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응급 치료 서비스에 부여하는 범위까지 공중보건법 제3001항, 제3005-a항, 제3008항, 제3010항.
- 응급 의료 치료 프로토콜 개발 또는 수정이 보건 커미셔너의 승인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 보건법 제3002항, 제3002-a항, 제3003항 및 제3004-a항.
- 마취학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가졌으며 숙련된 등록 간호사가 이러한 치료 환경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일반 병원 또는 자립 외래 수술 센터에서 마취를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의 405.13항 및 755.4항.
- 상급 의사의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민형사 상의 처벌 위험 없이 상급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은 의료 보조원이 교육, 훈련, 경험에 맞추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Education Law) 제6542항 1절 및 NYCRR 10장 제942항 부속조항 (a) 및 (b).
- 상급 의사의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민형사 상의 처벌 위험 없이 상급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은 전문 의료 보조원이 교육, 훈련, 경험에 맞추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Education Law) 제6549항 1절 및 NYCRR 10장 제94.2항 부속조항 (a) 및 (b).
- 간호사 개업자가 서면 치료 합의나 의사와의 협업 부재와 관련된 민형사 상의 처벌 위험 없이 서면 치료 합의, 의사와의 협업을 하지 않고 교육과 훈련 및 경험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제6902항의 부속조항 (3) 및 NYCRR 10장의 64.5절, 기타 NYCRR 10장 64.5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규정.
- 부서의 승인 하에 지역 또는 주정부 의료 관리 센터가 모든 비상 치료 서비스 인원에게 내리는 응급 및 비응급 지시를 포함하도록 의료 관리"를 정의하고 응급 의료 서비스 인원이 간호사, 의료 보조원, 응급요원이 의사의 감독에 따르며 보건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의 3001항 세부조항 (15), 800.3항, 800.15항, 800.16항.

- 상해 또는 사망이 전문 의료인의 중대한 태만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의사, 의료 보조원, 전문 보조원, 등록 간호사가 주정부의 COVID-19 사태 대응을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 의료인의 행동이나 무대응의 직접적인 결과로 추정되는 모든 상해나 사망의 민사상 처벌을 면제받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교육법 제6527항 세부조항 (2), 제6545항, 제6909항 세부조항 (1).
- 모든 의료 시설은 뉴욕주에서 등록을 받아 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생이 임상 제휴 계약에 따라 배치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료 시설 자원 봉사에 대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반대의 법률 또는 규정과 관계 없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평가 및 치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의료 기록 유지 의무, 또는 진단 코드 배정 의무 또는 청구 목적의 기록 및 유지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COVID-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 유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합리적이며 선의로 행동하는 사람은 기록 보관 요건 미준수 시,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절대적인 면책권을 누립니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합리적이며 선의로 행동하는 사람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법 제6530항 세부조항 32, NYCRR 8장 29.2항 세부조항 (a) (3)절, NYCRR 10장 58-1.11항, 405.10항, 415.22항, 기타 이러한 법률 또는 규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COVID-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일시 중단되거나 수정됩니다.
- 보건 커미셔너가 치료 시설을 트라우마 센터로 지정하거나 치료 시설을 트라우마 센터로 지정하는 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거나 트라우마 센터 평가 리뷰팀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의 405.45항.
- 기존의 모든 응급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을 일 년간 연장하고, 보건 커미셔너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인증에 대한 검사 또는 재인증 요건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건 커미셔너의 재량에 따라 과거 인증을 받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재인증 요건을 일시 중단 또는 수정하고, 보건 커미셔너의 재량에 따라 보건부가 결정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며, 다른 주에서 인증을 받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뉴욕주 내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며, 보건 커미셔너의 재량에 따라 응급 의료 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 또는 차량 요구 사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 800.3항, 800.8항, 800.9항, 800.10항, 800.12항, 800.17항, 800.18항, 800.23항, 800.24항, 800.26항.
- 의사 및 대학원 연수생의 근무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의 405.4항 세부조항 (b) (6)절.

- 외국 의료 교육 기관에서 최소 일 년간 의료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N.Y.C.R.R.10장 405.4항 세부조항 (g) (2)절 부속절 (ii)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이러한 졸업생은 최소 일 년 이상의 의료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병원에서 등록 없이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 재난 비상 사태의 영향을 받은 종합병원의 적절한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의 405.2항 세부조항 (e).
- 일반 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 또는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다른 종합병원과 관련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의 405.3항 세부조항 (b).
- 현재 뉴욕주의 적법한 일원인 방사선학 기술자이나 뉴욕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부재로 인한 민형사 상의 처벌 위험 없이 뉴욕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 보건법 제3507항 및 NYCRR 10장항 89항.
- 현재 미국 다른 주의 적법한 일원인 방사선학 기술자가 뉴욕주에서 면허 부재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 보건법 제3502항 제3505항 및 NYCRR 10장 89절.
- 현재 미국 다른 주의 적법한 일원이지만 뉴욕주에서 치료 행위를 하도록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은 양호한 자격을 갖춘 호흡 치료사가 뉴욕주에서 면허 부재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제8502항, 8504항, 8504-a항, 8505항, 8507항 및 NYCRR 8장 79-4절.
- 현재 뉴욕주의 적법한 일원이지만 뉴욕주에서 치료 행위를 하도록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은 양호한 자격을 갖춘 의료 조무사가 뉴욕주에서 면허 부재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제6502조 및 NYCRR 8장 59.8절.
- 현재 뉴욕주의 적법한 일원이지만 뉴욕주에서 치료 행위를 하도록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은 양호한 자격을 갖춘 등록 간호사, 등록 실무 간호사, 간호사가 뉴욕주에서 면허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제6502조 및 NYCRR 8장 59.8절.
- 호스피스 레지던스가 시설 내의 병상을 인증받은 입우너 환자 병상으로 지정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 보건법 제4002항 세부조항 (2-b).
- 임상 실험실 개선법(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cts, CLIA)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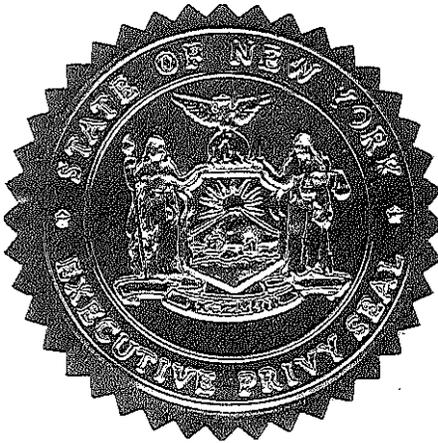
연방규제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42항 H, J, K, M 세부절에 명기된 CLIA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실험 시설이 COVID-19 의심환자로부터 채출한 표본에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 보건법 제5항 V장 및 NYCRR 10장의 19항 및 58장 19절.

- 면허가 있는 간호사가 목이나 비강 스왑을 통해 COVID-19 의심환자로부터 표본을 채취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까지 교육법 제139항, 공중 보건법 제576-b항, NYCRR 10장 58-1.7항.
- 면허가 있는 약사의 직접 대면 감독 하에서 인증을 받았거나 면허가 있는 약학 보조사가 뉴욕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지시에 따라 미국 약전 현장(United States Pharmacopeia General Chapter) 797 약제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준비하고 공중 보건법 제36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자택 돌봄 기관을 통해 자택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약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한 처방이나 투약 명령에 맞도록 약 조제, 준비, 라벨링, 배분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교육법 제6801항 세부조항 (1), 교육법 제6832항, NYCRR 8장 29.7(a)(21)(ii)(b)(4).

또한,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의 제29-a항가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22일 수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모든 의료 시설은 뉴욕주에서 등록을 받아 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생이 임상 제휴 계약에 따라 배치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료 시설 자원 봉사에 대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보건 커미셔너는 모든 일반 병원, 외래 수술 센터, 사무실 기반 수술 관행 및 진단 및 치료 센터들에 모든 선택 수술 및 절차를 취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자용 병상 수를 늘릴 것을 지시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렇게 지시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뉴욕주 보건부에 COVID-19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 이러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건 커미셔너는 필요 병상 확보 의무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일반 병원의 운영 면허를 중단 혹은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모든 법 규정과 관계 없이 커미셔너는 뉴욕주 주민들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운영자에게 24시간 전 통지하여 운영을 계속할 리시버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약사는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을 받은 처방전, 또는 COVID-19와 관련하여 주정부가 승인한 COVID-19 확진자 대상 임상 실험의 일환으로 실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처방을 제외하고 하이드로클로로킨 및 클로로킨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기타 모든 실험 또는 예방 목적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승인 받은 처방은 리필 없이 14일 처방으로 제한됩니다.
- 등록된 모든 건강 보험사는 2020년 3월 24일까지 의료 조무사, 의사, 면허가 있는 등록 간호사, 면허가 있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간호 조무사 등이 모든 전문 면허증 또는 학위 소지자의 목록과 함께 현재 면허 유효 여부 또는 최근(5년 이내) 뉴욕주 면허가 면료되었는지 여부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해당 전문가들이 COVID-19 대응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모든 목적(파티, 축하 또는 기타 사교 행사 등)으로 열리는 모든 규모의 비필수 모임은 해당 시기에 취소 또는 연기됩니다.



주지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Mr. C" followed by a long, sweeping horizontal line.

주지사 비서

2020년 3월 23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Andrew Cuomo" in a cursive style.